

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123

발의년월일 : 1992. 9  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('91. 12. 31개정, '92. 7. 1부터 시행)
  - 자동차등록번호표의 탈착허가 업무등이 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부터 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
  -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, 군수에게 기위임하였던 사무는 내용변경없이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신설 위임하고
- 자동차등록업무 시군위임확대계획 추진('92. 3월부터)
  - 자동차등록업무 시군위임확대계획 추진과 관련 도지사의 권한사무중 민원인의 편의증진,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
  - 자동차번호판의 제작·교부 및 교부대행자의 지정과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등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신설 위임하려는 것임

## □ 주요골자

- 총 위임건수 : 11건
  - 기 위 임 : 5건(규칙→조례)
  - 신규위임 : 6건(조례신설)
- 위임업무
  - 자동차의 등록 : 5건
  -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: 2건
  - 이륜자동차의 관리 : 2건
  - 자동차관리사업 : 2건

## □ 법령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)
- 자동차관리법

## □ 기타참고자료 : 별첨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사항) '별표'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중 제3호 다음에 제4호 내지

제1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### 권 한 위 임 사 무

분 야 별	일련번호	사 무 명	근 거 년 령
교통행정과	1 - 3	(현행과 같음)	
	4	○ 등록번호표의 탈착허가	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
	5	○ 등록번호표의 제작, 교부 및 봉인	동법 제16조
	6	○ 등록번호표의 제작, 교부 및 봉인을 대행하는 자의 지정	동법 제17조
	7	○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 명령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	동법 제18조
	8	○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와 해임명령	동법 제36조
	9	○ 차고시설확보신고의 수리	동법 제37조 제2항
	10	○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,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신고의 수리	동법 제44조
	11	○ 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	동법 제45조 제2항
	12	○ 자동차관리사업의 대표자의 변경, 사업의 양도·양수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개시,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신고수리	동법 제51조
	13	○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보고, 검사 또는 질문	동법 제66조 제2항, 제3항
	14	○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문	동법 제67조

# 신 구 문 대 조 표

현 행				개 정			
분야 별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 법령	분야 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거 법령
교통 행정 과	1-3	(생략)	(생략)	교통 행정 과	1-3	(현행과 같음)	
				4	○ 등록번호표의 탈착허가	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	
				5	○ 등록번호표의 제작, 교부 및 봉인	동법 제16조	
				6	○ 등록번호표의 제작, 교부 및 봉인을 대행하는 자의 지정	동법 제17조	
				7	○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	동법 제18조	
				8	○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의 수리와 해임명령	동법 제36조	
				9	○ 차고시설확보 신고의 수리	동법 제43조 제2항	
				10	○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,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	동법 제44조	
				11	○ 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	동법 제45조 제2항	
				12	○ 자동차관리사업의 대표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·양수 기타 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개시, 휴지 또는 폐지 하는 경우의 신고수리	동법 제51조	
				13	○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보고, 검사 또는 질문	동법 제66조 제2항, 제3항	
				14	○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문	동법 제67조	